

#2. 중대재해의 정의 및 분류

지난 기고에서는 중대재해법의 배경과 의의 및 시행을 대비한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기고에서는 중대재해의 정의와 분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의 정의 및 분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합니다)은 중대재해의 정의를 (i) “중대산업재해”와 (ii)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중대재해처벌법 제 2 조 제 1 호) 각 재해와 관련한 이해관계인들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처벌 사항을 구분하고 별도의 장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i)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 2 조 제 2 호)와 개념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ii)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포섭하고 있는 범위 외의 개념으로 가슴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방지를 위한 안전주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각 개념과, 어떤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법률안의 문헌적 해석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2.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산업재해(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재해) 중 일정 기준의 수 이상의 사망자·부상자를 발생시킨 재해를 뜻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 2 조 제 2 호). 본 개념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라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는데(동법 제 2 조 제 2 호, 동법 시행규칙 제 3 조), 각 개념이 요구하는 사망자·부상자의 기준이 상이하며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산업재해’ 중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환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환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산업재해로부터 발생한 재해’이며,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종사자 등이 작업·업무를 원인으로 하여 다친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한 재해, 작업·업무 외에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될 여지가 없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중대재해’와는 동일하게 산업재해와 관련된 것이지만 ① 요구되는 부상자의 수, ②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 ③ 의무 위반시 처벌의 대상 및 정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②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과 관련하여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자들은 아래 내용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며, 아래 중 제 1 호 및 제 4 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 4 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는 그 입법과정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던 개념으로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로 일정 기준 이상의 사망자·부상자·질병자를 발생시킨 재해’를 말한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3호). 이때 위 정의 중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상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공중이용시설 (동조 제4호)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면적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사업장, 비영리시설, 교육 시설은 제외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의 시설* *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실내주차장,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과 건축물, 실내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등이 포함됨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시설물**, 공동주택은 제외 **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 등이 포함됨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장*** ***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영화관, 비디오물감상실업, 학원, 목욕장업,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권총사격장, 골프연습장업, 안마시설소 등이 포함됨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공중 교통수단 (동조 제5호)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 객차(철도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 제2조제1의2호의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제조물 (동조 제6호)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제조물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자가 사망, 부상당할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세월호 참사, 가슴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사회적 참사가 포함됩니다. 예컨대 가슴기 살균제 사건 및 성수대교 사건과 같은 중대한 제조상·설계상의 하자 및 결함으로 다수의 시민이 사상한 경우 본 법에 의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존에도 제조상·설계상 하자로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제품안전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안전법」, 「제조물책임법」 등에 의하여 현장의 사업주 및 관리 담당자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 관한 직접적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과 관련하여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 9 조). 현재까지는 법상으로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은 제 4 조의 중대산업재해에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추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규정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중대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의무와는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21 SEUM Law.

중대재해 TF - 이병일 변호사

Partner

byungil.lee@seumlaw.com

중대재해 TF - 신영주 변호사

Associate

youngjoo.shin@seumlaw.com